



제437회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재판 관할 변경〉

■ 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85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세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내용	3
2. 검토의견	4
3. 관계기관 의견	6
※ 부록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정재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9. 10.
3. 회 부 일 : 2025. 9.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첨단기술 보호가 국가안보 차원으로 격상됨에 따라 기술 유출·침해에 대해 전문성 있는 법원에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지식재산 침해소송 관할집중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 본안소송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은 제외되고 있어 가처분 사건의 전제가 되는 민사 본안소송과의 연계성 미흡 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에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첨단기술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기술유출 및 지식재산 침해 피해에 대한 신속·정확한 처리와 일관성 있는 판결을 위하여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사집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민사가처분 재판은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여 지식재산 관할집중 대상 사건에 대한 민사 가처분 재판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303조제2항 신설).

나.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법원과 다툼의 대상이 되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사이에 직권이송 및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이송이 가능하도록 하되,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한 민사가처분 사건의 특성상 현저한 소송지연 방지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이송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직권이송만을 허용함(안 제30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¹⁾(이하 “특허권 등”이라 함)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 함)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가처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사건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되, 그로 인해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음(안 제303조).

현행	개정안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u><신설></u>	제303조(관할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1)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반도체배치설계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부정경쟁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의 영업비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 및 같은 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

<신 설> <신 설>	법」 제2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300조제2항²⁾의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처분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④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사건을 제2항에 따른 본안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 검토의견

현행법(제303조)은 가처분의 재판을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할 뿐, 지식재산권

2)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과 관련한 가처분 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의 관할에는 본안의 관할법원 및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가령 지식재산 침해행위가 발생한 현장)의 관할법원이 모두 해당함.

개정안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55호) 의결을 전제로 특허권 등에 관한 가처분 사건의 재판은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하도록 하되,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신청이 있는 경우,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사건을 본안의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지식재산권 분쟁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즉, 지식재산권 분쟁의 가처분 사건은 본안소송처럼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해당 가처분 사건과 본안 사건을 일치시키는 관할 집중을 통해 재판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한편, 가처분 사건에서도 실효적인 증거조사 절차를 구현할 수 있다고 보이고,

특허권 등에 관한 가처분 재판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직권이송을 허용하고,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특허권 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처분 사건에서도 이송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은 지식재산권 사건의 신속한 권리구제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봄.

다만, 관할의 문제는 재판의 전문성·통일성 및 신속성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편의성과 법원의 사건수용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3.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 사건 및 민사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이 일치되도록 할지는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나, 안 제303조제2항 중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재판” 및 안 제303조제4항 중 “「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지식재산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문구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거나 해석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보완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개정안이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별전문위원회³⁾」에서 지식재산 관련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 학계·법조계·산업계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2년(2023. 1월~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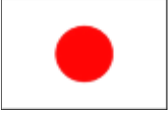
3) 신성철 KAIST 초빙 석학교수를 위원장으로 지식재산 법·제도, 학계, 산업계 등 민간 전문가 15명과 정부위원(국가지식재산위원회, 문체부, 특허청, 국조실, 법무부) 5명으로 구성.

12월)간 논의 끝에 도출된 ‘산업계-법조계-정부의 합의안’으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지식재산권 주요국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대상이 확대되는 국제 사법 체계의 흐름에 부합하고 재판의 전문성과 판결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61

※ 부록

<주요국의 지식재산소송 관할집중 동향>

국가	세부 내용
 [미국]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영업비밀 민형사 소송으로 관할집중 확대 ■ '82년부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에 대한 침해 소송 항소심(2심) 및 美무역위원회(ITC)의 지재권처분 불복 전속관할 ■ '96년부터 연방법원이 경제스파이법(EEA) 형사제재, '16년부터는 영업비밀 보호법(DTSA) 민사소송 및 형사제제도 전속관할
 [유럽연합]	EU전역에 특허침해 민사소송 및 민사가처분·가압류소송 관할집중 도입 ■ '23.6월 개원한 유럽통합특허법원은 특허침해소송, 특허 무효·취소 소송 등 뿐만 아니라, 가처분·가압류 등 잠정적 보호조치도 관할집중 도입 ※ 포르투갈('11), 영국('10~'15), 스페인('17) 등도 관할집중 도입
 [일본]	기술형 사건 뿐 아니라 부정경쟁·저작권 등 비기술형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 ■ (1심 관할집중) '96년에 기술형(특허, 실용, 회로배치설계 등) 및 비기술형(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저작권 등) 사건 도쿄·오사카지방법재판소 중복관할 → '04년 기술형 사건에 한하여 도쿄·오사카 전속관할 인정 ■ (2심 관할집중) '05년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신설하여 기술형 사건에 대한 2심의 경우 지적재산고등재판소로 전속관할 시행
 [중국]	특허·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반도체배치설계 등에 민사·행정소송 관할집중 ■ 특허, 신제품, 상표, 영업비밀, 부정경쟁, 회로배치설계 등 1심은 3개 지식재산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2심은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관할 집중('14) → 지식재산법원(베이징, 상하이, 광저우)에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모두 관할

자료: 국가지식재산위원회